

중앙집권적 구매보다 시장지향적 공급절차 장려해야

정부·기타기관 농약구입, FAO 구매절차에 근거하고
농약장려금·기부금, 과잉·부정한 사용 안돼게 보장해야

- 기술부 -

- 5.2.3.3 농약 노출을 최소화할 처리방법과 장비를 개발한다;
- 5.2.3.4 효과적인 폐용기 수집체계가 있는 경우 재활용과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다;
- 5.2.3.5 효과적인 용기 수집 체계가 없는 경우 연속적인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고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5.2.3.6 특히 가정용 제품에 대해 어린이가 쉽게 관심을 갖지 않고 쉽게 열리지 않는 용기를 사용한다;
- 5.2.3.7 명확하고 간소한 라벨을 사용한다.
- 5.2.4 어떤 사용상의 주의사항 또는 제한하에 취급이나 사용이 허용할 수 없는 위해성을 갖고 있을 때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 5.3 정부와 산업계는 다음 행위로 위해성보다 감소시키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 5.3.1 적절하고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의 사용 촉진(5);
 - 5.3.2 창고와 농장에서 농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규정 마련(26,27);
 - 5.3.3 사용한 용기와 소량의 잔여 농약의 안전한 처리 및 수집을 위한 기관 설립(28);
 - 5.3.4 생물다양성 보호와 환경(물, 토양, 공기)과 방제 대상이 아닌 생물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 5.4 일반대중의 부당한 혼란이나 불안 방지를 위해 관련단체는 모든 가능한 사실을 고

려해야 하며 농약과 그 사용에 대한 책임있는 정보 보급을 도모하여야 한다.

5.5 개발도상국에서 적합한 기준의 생산시설 설립시 제조업자와 정부는 다음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 5.5.1 제조작업 및 그와 관련된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기계공학적 표준규격과 작업기준을 적용하고 적절한 보호설비의 이용 보장;
- 5.5.2 작업자와 주변 사람, 주변 공동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마련;
- 5.5.3 제조 및 제제화 생산설비의 적당한 배치와 폐기물 및 폐수의 적절한 관리;
- 5.5.4 순도, 반응, 안정성 및 안전성의 관련 기준을 지키게 할 품질 보증 절차의 유지.

제6조 규제 및 기술 요건

6.1 정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6.1.1 가능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침을 활용하여 농약관리를 위한 필요한 법률을 도입해야 하고 적절한 교육, 자문, 현지지도 및 건강관리기관 설치를 포함하는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부는 지역의 필요사항, 사회·경제적 상황, 문맹수준, 기상조건, 적절한 농약 살포의 이용성, 개인 보호장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2, 29, 30);
- 6.1.2 제품이 국내사용전에 등록되는 농약 등록계획 및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각의 농약 제품이 사용

되기 전에 등록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29, 30, 31);

- 6.1.3 등록과정의 한 부분으로 모든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위해성 관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 6.1.4 농약의 동질성 결정을 위해 농약 규격명세서 개발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 편람에 기술된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21);
- 6.1.5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술 지침과 기준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그룹별로 조화된 농약등록 요건, 절차 및 평가기준 설정의 이점을 도모하고 그 설정에 다른 정부와 협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이 기준들을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에 반영해야 한다(32, 33);
- 6.1.6 농약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자료에 따라 규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취해질 수 있도록 농약의 주기적 검토를 보장할 재등록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 6.1.7 농약의 수입, 수출, 제조, 제제화, 품질, 수량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록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6.1.8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경제적 목적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사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약의 수입, 수출, 제조, 제제화, 품질, 수량 및 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6.1.9 농약사용 및 개인 보호장비가 설정

된 기종이 혼합될 경우에만 판매되도록 허가해야 한다(5.8.9);

6.1.10 농약의 불법 교역을 탐지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6.1.11 식품과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교역 국가에서 최적표준영농법 실시 여부를 인지하여야 하며 코덱스 식품규격위원회 권고에 따라 무역에 기술적 장벽을 선도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 요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와같은 최적표준영농법에 의한 잔류농약의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19, 20).

6.2 농약산업계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2.1 위해성 평가를 지원하고 위해성 관리결정이 이루어지게 허용할 충분한 자료를 포함한 각 제품에 대한 필수 지원 자료와 함께 객관적인 농약자료 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2.2 가능한 조속히 농약의 규제 상황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최신의 정보를 국가 규제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6.2.3 시판되고 있는 농약제품의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이 독성학적 및 환경적 수용을 위해 시험, 평가, 확인된 물질과 동일성, 품질, 순도, 조성면에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2.4 국제 규격명세서가 개발되어 있는 농약의 유효성분 및 제제는 그 용도가 농업용 농약인 경우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 규격명세서, 보건위생용 농약인 경우 세계보건기구 농약 규격명세

서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2,23).

6.2.5 판매할 농약의 품질과 순도를 증명해야 한다;

6.2.6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교정작업을 취해야 하며 정부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내도록 도와야 한다;

6.2.7 정부에 농약의 수출, 수입, 제조, 제제화, 판매, 품질 및 수량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3 기술지원기금 출연기관, 개발은행, 양국의 기관은 농약관리와 규제체계를 위한 전문가나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요청에 최우선 순위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이용성과 사용

7.1 책임있는 정부기관은 농약의 이용성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제정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숙련도 및 교육정도에 알맞아야 한다. 이와같은 이용성에 관한 결정에 기초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하며 각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7.2 이외에도 각 행정부는 그들의 규제수단 기초로서 적절히 세계보건기구의 농약 위해 정도에 의한 독성분류에 관심을 갖고 적절할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잘 인지된 위험 표시와 위해 등급을 결합하여야 한다. 위험도 및 제한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제품에 적용될 때 제형과 살포방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35).

7.3 이용성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제품을 등록시키지 않거나 등록의 조건으로 그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국가 평가에 따라 특정 사용자 그룹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정부기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7.4 정부와 산업계는 일반 대중에 이용되는 모든 농약은 포장과 라벨에 관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침과 적절한 국가 규정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포장되고 라벨, 표기되어야 한다(3).

7.5 세계보건기구 독성기준 Ia, Ib에 포함되는 고독성 및 위험한 제품의 수입, 판매 및 구입 금지는 기타 규제조치나 최적유통기준이 그 제품이 사용자에게 대해 허용가능한 위해정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가능하다(35).

제8조 유통 및 무역

8.1 정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1.1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구매자에게 위해감소와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건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관매와 관련된 규정을 개발하고 인가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26);

8.1.2 식품이나 음료수 용기에 농약을 옮기는 행위나 재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엄격한 처벌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8.1.3 과도한 재고 증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중앙집권적 구매가 아닌

시장지향적 공급절차를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타 기관이 농약을 구매할 때는 농약에 대해 설정된 유엔식량농업기구 구매공고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4);

8.1.4 농약 장려금이나 기부금이 관심을 보다 지속적인 대체 수단에서 이탈하여 과잉 또는 부정산 사용에 이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8.2 농약산업계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8.2.1 국제무역이 되는 농약은 적어도 다음에 일치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2.1.1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규격 또는 그러한 규격이 개발되어 온 경우에는 동질성 규격 명세서 (22,23);

8.2.1.2 분류, 포장, 마케팅, 라벨, 조달 및 문서에 관한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침에 구체화된 원칙(3,4,26);

8.2.1.3 위험상품의 운송에 관한 유엔 권고사항(36)과 특정 운송 형태와 관련된 국제기구(예, ICAO, IMO, RID, ADR, IATA)에 의한 규칙과 규정(36);

8.2.2 수출용으로 제조된 농약은 비교가능한 국내용 농약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요건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2.3 자회사에 의해 제조 또는 제제화되는 농약은 적절한 품질요건과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즉 제조국과 모회사 요건이 일치되어야 한다; **농약정보**